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73

제출년월일 : 2024년 4월 3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·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각 시도에 개정 권고

나.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(법제처)의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체계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위촉위원 성별 고려(안 제4조)

-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

나. 위촉위원 비율 규정(안 제9조제3항)

-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

다.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(안 제3조～제1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사항 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해당없음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
※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따라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3. 11. 16. ~ 12. 6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신희진 (☎2133-7829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.

제3조의2를 제7조로 하고, 제5조를 제10조로 하며, 제6조를 제9조로 하고, 제7조를 제8조로 하며, 제8조를 제5조로 한다.

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며,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.

제3조(종전의 제4조)의 제목 "(기능)"을 "(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8호 중 "시장 또는"을 "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또는 심의회의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・감독

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종전의 제3조)의 제목 “(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)”을 “(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으로 구성하며,”를 “사람 중에서”로,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시의회 의장이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가”로 한다.

제5조(종전의 제8조)의 제목 “(임기)”를 “(위원의 임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8조(종전의 제7조)의 제목 “(위원장)”을 “(위원장의 직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, 제3항 및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위원장”을 “심의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9조(종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회의는”을 “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심의회 회의”를 “회의”로, “제3조제2항”을 “제4조”

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위촉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심의회 회의”를 “회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종전의 제6조)제6항 중 “심의회 회의”를 “회의의”로, “된다”를 “각각 맡는다”로 한다.

제11조(종전의 제9조)제2항 중 “안건”을 “의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제외한다”를 “예외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(종전의 제11조) 중 “공무원이나 전문가,”를 “공무원, 전문가”로 한다.

제14조(종전의 제12조)제3항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16조(종전의 제14조)제1항제1호 중 “제12조제3항”을 “제1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(종전의 제15조)제2항 중 “의회에”를 “시의회에”로 한다.

제19조(종전의 제16조) 중 “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”을 “회의에 참석하는”으로 한다.

부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　　　행	개　정　안
제3조(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)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 · 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4조(구성) <삭　제>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------------------------사람 중에서-------------------- --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1. (생　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외부위원 :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	2. -------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가 ----- --
3. (생　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의2 (생　략)	제7조 (현행 제3조의2와 같음)
제4조(기능) <신　설>	제3조(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 · 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

	역 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	8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심의회의 ---------
제5조 (생 략)	제10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<신 설>	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제6조(회의)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	제9조(회의) ① ----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심의회 회의는 심의 안건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내부위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③ 회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4조-- 구성하되, 위촉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④ 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	④ 회의------------------

해서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--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 창의행정담당관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,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자가 된다.	⑥ 회의의--- 각각 맡는다.
제7조(위원장) ①·② (생 략)	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②·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.	① 심의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.
제8조(임기) ①·② (생 략)	제5조(위원의 임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<삭 제>

④ (생 략)	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9조(의안제출) ① (생 략)	제11조(의안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, 사업목적, 사업의 필요성, 사업내용, 용역방법, 용역기간, 용역비용, 계약방식과 그 이유, 자체심사결과,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 의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.	③ --. --- 예외로 한다.
제10조 (생 략)	제12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,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	제13조(의견청취 등) -- 공무원, 전문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	---.
제12조(점검 및 평가) ①·② (생 략)	제14조(점검 및 평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	③ -- 누리집 --------------------.
제13조 (생 략)	제15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제14조(부실용역에 대한 조치) ①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	제16조(부실용역에 대한 조치) ① --.
1. 제12조제3항의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	1. 제14조제3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2 (생 략)	제17조 (현행 제14조의2와 같음)
제15조(회의록 등) ① (생 략)	제18조(회의록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의회에 ---.

제16조(수당 등)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9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하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.

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동 개정안은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・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동 개정안은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부서명 :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신희진 주무관(2133-7829)